

#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10. 16.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38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김현정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김현정 의원)

-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4차 산업 기반 기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안 제5조)  
○ 지원 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안 제8조, 안 제9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

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2023. 10. 5. ~ 10. 9.(5일간)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 기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진구 조례” 입법례를 따르고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음.
  - 참고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의견이 있어 향후에는 미래산업이라는 용어가 더 적실성이 있을 것임.
-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 제5조가 밝히고 있듯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과 관련이 있음.
  - 해당 조례들과 비교해 본 바로는 본 조례안은 사업지원 조례의 성격이 강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많지 않고,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는 관련성이 있으나,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원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등이 빠져 있어 이를 보강하려 한다면, 로봇산업을 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이 기업 관련 사업지원 조례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성이 더 높으나, 업무 담당 소관 부서의 성격이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가 아닌 미래문화국 디지털도시과와 가까워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조례안이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특화산업 규정이 있어 중복적인 성격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그 조례안 필요성 여부는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안 제8조제2항이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를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항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스마트도시 기본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4차 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기업지원 선정 등과 관련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는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이기에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에 대항을 맡기는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음.
- 비용추계 등 예산 관련 사항으로, 현재 디지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업(377,145천원) 내용 중에 4차 산업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 그 세부내용은 4차 산업 기업선발, 기술세미나 개최, 기업 간 네트워킹 등임.
  - 이러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 및 시행되어 직접적인 사업지원 근거로 적용되는 것이 행정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38호

제안일자 : 2023.10.16.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제명 등 학계에 논란이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제명 및 조례안 내 “4차 산업” 을 “미래산업” 으로 수정하여 학계에 비판적인 용어 정비(조례안 제명 등)
-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를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 가 대행하게 하는 것은 관련성이 적고 다소 합리적이지 않아 조문 삭제(안 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4차” 를 “미래” 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 “4차” 를 “ “미래” 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4차 산업 기반 기업)” 을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호 중 “4차” 를 각각 “미래” 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4차” 를 각각 “미래” 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차 산업 기반 기업을” 을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로,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을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4차” 를 각각 “미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로 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차” 를 “미래” 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을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4차” 를 각각 “미래” 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를 “(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 산업 기반 기업 관련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지원 관련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안 제9조제3항제2호 중 “4차” 를 “미래” 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4차</u>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지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4차 산업 기반 기업”이란 서울특 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 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 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 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 을 말한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4차 산업 기반 기업) 4차 산업 기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 <u>미래</u> ----- ----- ----- ----- ----- -----.</p> <p>제2조(정의) ① ----- -----.</p> <p>1. “<u>미래</u> -----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u>미래 산업 기반 기업</u>) <u>미래</u> --- ----- -----.</p> <p>1. ~ 8. (현행과 같음)</p>

9. 기타 구청장이 4차 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 기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 산업 기반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생략)
2.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생략)
4. 4차 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 미래 -----  
-----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미래 -----  
-----  
-----

② ----- 미래 -----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  
-----  
-----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  
-----

1. (현행과 같음)
2. 미래 -----  
-----
3. (현행과 같음)
4. 미래 -----  
-----  
-----

5. 그 밖에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4차 산업 기반 기업을 육성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7조(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구청장은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

5. ----- 미래 -----

②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지원 기업 선정) -----  
-----  
- 미래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미래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미래 -----

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 기반 기업 관련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 기반 기업 지원 관련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  
-----.

제8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 산업 기반 기업 관련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지원 관련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생략)

2. 4차 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략)

④·⑤ (생략)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미래 -----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 지원 관련 용어의 뜻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 구축 분야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 창출 분야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 포괄 분야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

8. 로봇산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

9. 기타 구청장이 미래 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2.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미래 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육성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7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 산업 기반 기업 관련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지원 관련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

2. 미래 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